# 2012.3.5 제172± Weekly

#### 이슈

영국의 보험모집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시사점

#### 포커스

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 금융보험 해설

중국 금융시장 7: 보험산업 발전 역사와 현황(1)

# 국내금융 뉴스

정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

# 해외금융 뉴스

북미 유가상승 불구. 소비자 신뢰도 개선

유럽 유럽중앙은행(ECB)의 제2차 장기대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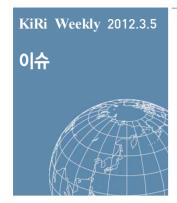
\_ G20, IMF 재원확충 3월로 연기

일본 일본 대형 연금운용회사, 부실운용으로 가입자 피해 발생

중국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 진전

## 금융시장 주요지표





# 영국의 보험모집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료와 고지수령권 존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규정은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 억제 및 선량한 보험계약 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실제로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모집인이 상기 설명의무를 준수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관련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의 부정행위를 방관할 수 있음.
  - 또한, 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제 및 감시하기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 영국「보험계약법」개정(안)의 원칙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한, 고지사항의 수령만 큼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해당 모집인의 부실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영국 현행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보험계약자는 제대로 고지하였으나,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수당 등을 위하여 동 고지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 치게 불리 또는 가혹하지 않은가하는 관점에서 출발함.
-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맺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개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보험모집 시 계약3권 존부에 대한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 등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신설함(동 시행령 제42조의 2).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료와 고지수령권 의 존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동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제1호)
  - 보험모집인이 상기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보험업법」제209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 □ 그러나 상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규정은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 억제 및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판례 및 다수설에 따르면 계약자가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모집인에게 정직하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상법」제651조).1)
    - 계약자의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다수설에 따르면, 계약자 측의 중요사항의 고지·통지가 모집 인의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 측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 측은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sup>2)</sup>
    -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고지·통지수령권을 부정하고 계약자의 고지·통지의무에 대해 다수설을 따름(대법원 98다62909, 대법원2006다19672).3)
  - 동 설명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 점으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사 통제하도록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sup>1)</sup>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 시 계약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해지 전까지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 시까지의 미수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 시에도 납부된 보험료 반환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으며.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sup>2)</sup> 김원규(2011),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3권.

<sup>3)</sup>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면서도 보험모집인에게 고지된 중요사실이 보험회사에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모집인의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과실에 의한 부지로서 보험회사 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판례가 있음. 상세는 김원규(2011)를 참조바람.

- 최근 영국에서는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와 보험모집인의 부실고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대한 개정(안)(「가계보험법」(안):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Bill)이 상원에 제출됨.4)
- 이에 본고는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와 이들의 부실고지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책임에 대한 영국의 개정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2.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현황과 문제점



# 가.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로서 보험 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을 의미함.
  -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독립된 자임(「상법」제87조).5)
  -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보험상품 중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자임(「보험업법」제2조 제11항).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임(「보험 업법」제2조 제9항).
  - 1996년부터 인정된 독립대리점은 특정보험사업자의 통제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판매 권한을 가진 대리점으로 대리점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회사의 관리, 통제를 받는다는 점과 복수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사와 크게 다름.6)

<sup>4)</sup> 개정 논의 과정은 http://www.justice.gov.uk/lawcommission/areas/insurance-contract-law.htm을 참조 바람.

<sup>5) 「</sup>보험업법」제2조 제10항은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정의한다.

<sup>6)</sup> 김성태(2001), 『보험법강론』, 법문사, p. 87.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권을 가지는 체약대리점과 중개만을 하는 중개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손해보험은 체약대리점을 인정하는 반면, 인보험은 계약체결권을 보험회사에 집중시키기위하여 중개대리점만 인정하고 있음.7)
  - 보험실무상 손해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보험대리점에 대해 체약대리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반면, 인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고 승낙여부에 대한 보험기술적인 최종판단을 보험회사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크므로 대리상에 계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체약대리점은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권을 가지므로 고지수령권은 물론 보험료 수령, 보험계약의 변경, 연기,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그 대리점이 알고 있는 사유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상법」제90조, 제646조).
  -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점에서는 보험중개사와 같으나, 특정한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개한다는 점에서 다름.
- ## 보험모집인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 또한 상이하므로 보험모집인은 계약에 앞서 그의 권한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대법원은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보험설계사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함(대법원88다카 33367)
  -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권한을 가질 뿐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고지 및 보험료 수령권과 계약체결권이 없으며, 중개대리점이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8)
  - 체약대리점은 계약3권을 가진 반면, 보험중개사는 계약3권이 없음.9)

<sup>7)</sup> Ibid, p. 96.

<sup>8)</sup> 양승규(2002), 『보험법』, 삼지원, p. 86.

<sup>9)</sup> 여기서 계약3권이란 계약체결권,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을 의미함,

〈표 1〉 보험모집인의 권한

구분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보험설계사	×	×	1회 수령권 인정
보험대리점	0	0	0
보험중개사	×	X	X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2. 12).

#### 나.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관련 문제점

-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취득한 고지의무 관련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유인이 존재함.
  -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고지사항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여부가 모집인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회사와의 이해관계가 단기적으로 대립할 경우 수령한 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10)
    - 구체적인 예로 모집자가 수령한 고지사항이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내지는 보험요율 상승의 원인 이 된다면 이는 보험모집인의 수입과 직결된 사항으로 이를 정직하게 보험회사에 전달할 가능성은 낮음.
- 보험모집인에게 부실고지 유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어진 법적 권한과 책임이 보험모집인별로 상이하고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입장에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 첫째, 고지수령권과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에 중요 사항을 고지하였으나,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의 상황에 노출됨.
  - 다만, 「보험업법」제102조는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 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둘째,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계약3권의 존부를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의 실효성이 미약한 데다 동 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지도 의문임.

<sup>10)</sup> 구체적인 예는 Law Com No. 182 Scot Law Com No. 134, para 9.59를 참조 바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료 및 고지수령권 존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
-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모집인이 동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속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대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다투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적발되는 등 낮은 적발률에 따라 보험모집인은 계약3권 존부에 대한 설명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지 않을 유인이 큼.
- 셋째, 현행 제도하에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관련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의 부정행위를 방관할 경제적 유인을 가짐에도¹¹)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아울러 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제·감시하기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

# 3. 영국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



# 가. 현행법과 개정(안)

- 영국 대리법(agency law)에 따르면 모집인의 고의적 또는 미필적 고의의 부실고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는 모집인이 보험회사의 대리인인지 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인지에 달려 있음.12)
  - 모집인이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라면 보험회사는 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선량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한편, 모집인에게 손해 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sup>11)</sup>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관련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의 부정행위를 방관할 유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sup>12)</sup> Law Com No. 319 and Scot Law Com No. 219(2009, 12), papa 8.3.

- 모집인이 계약자의 대리인이라면 모집인의 고의적 또는 미필적 고의(deliberately or recklessly) 의 부실고지에 대해 보험회사는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령한 보험료를 환급할 필요도 없음.
  - 모집인이 계약자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모집인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비례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모집인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판례(1929)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 모집인이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sup>13)</sup>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첫째,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보험 회사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청약서를 완성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를 조력하는 행위를 하는 동 안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대리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계약자가 책임질 필요가 있음(Transferred Agency 이론).
  - 둘째, 계약자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청약서상 계약자의 자필서명은 보험모집인의 실수, 악의,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계약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임.
- 현행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보험계약자는 제대로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수당 등을 위하여 동 고지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 또는 가혹하지 않은가하는 관점에서 출발함.
- 개정(안)의 원칙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명시적으로 대리하는 한, 고지사항의 수령만큼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모집인의 부실고지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져야한다는 것임.
  - 모집인이 보험회사의 설계사(appointed representative)이거나, 고지수령권 또는 계약체결권을 가진 경우 동 모집인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함. 14)

<sup>13)</sup> Newsholme Brothers v. Road Transport and General Insurance Co. Ltd.(1929). Newsholme Brothers는 보험회사 소속 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모집인이 고의로 계약자가 제공한 것과 다르게 청약서상 의 질문에 답함.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동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sup>14)</sup>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Bill, Schedule 2: The agent is to be taken as the insurer's agent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a) when the agent does something in the agent's capacity as the appointed representative of the insurer for the purpos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모집인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할만한 동 사항 외에 다른 정황이 없는 한 계약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함.
  - 2007년 Consultation Paper에서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일하는 독립적인 매개체가 아닌 한 이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5) 이후 보험회사의 입장을 감안하여 마무리됨 16)

#### 나. 개정근거

- -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보험회사는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방관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유인으로 보험모집인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인 방지 노력
    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sup>19)</sup>

<sup>(</sup>b) when the agent collects information form the consumer, if the insurer had given the agent express authority to do so as the insurer's agent, (c) when the agent enters into the contract as the insurer's agent, if the insurer had given the agent express authority to do so.

<sup>15)</sup> Law Com No. 182 and Scot Law Com No. 134, para 12.70.

<sup>16)</sup> Law Com No. 319 and Scot Law Com No. 219, part 8.

<sup>17)</sup> 고지의무와 관련된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영국의 개정논의는 Intermediaries and Pre-contract Information: Issues paper 3(2007. 3)에서 시작되어,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182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Discussion Paper No. 134(2007. 7), Reform Insurance Contract Law: A Summary of Responses to Consultation(2008. 5),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319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Discussion Paper No. 219(2009), Policy statement: The Status of Intermediaries—for whom does an intermediary act in transmitting pre-contract information from consumer to insurer?(2009. 3) 순으로 전 개되었으며,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Bill로 마무리 된 상황임.

<sup>18)</sup> Law Com No. 182 and Scot Law Com No. 219, p. 254.

<sup>19)</sup> Law Com No. 182 and Scot Law Com No. 219, para 10.23.

#### 〈예시: 보험모집인의 부실고지를 보험회사가 방관할 유인〉

- 중대질병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100건당 한 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평균 보험료는 1.000파운드, 보험금의 평균 지급액은 5만 파운드임, 보험인수비용은 500파운드임.
- 어느 한 보험모집인이 최대한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건강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그는 100명의 고객에게 거짓을 말해도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부실고지가 위험을 배가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함.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만 파운드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함. 즉.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5만 파운드가 추가 지출됨.
- 이 때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험회사는 두 건의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보험금 지급이 없게 됨. 수령한 총 보험료 10만 파운드 중 5만 파운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것이나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됨.

자료: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182, p. 254.

- 둘째,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모집인의 행위를 통제·감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가 모집인을 통제·감시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위치에 있으므로 부실고지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 소비자는 보험모집인을 통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보험회사가 통제·감시할 수 없는 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음.<sup>20)</sup>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통제·감시할 수 있는 모집인의 범위를 해당 모집인이 보험회사의 설계사이거나 고지수령권 또는 계약체결권을 가진 경우로 명시함.<sup>21)</sup>

<sup>20)</sup> Law Com No. 319 and Scot Law Com No. 219(2009, 12), para 8.14.

<sup>21)</sup>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Bill, Schedule 2.

# 4. 결론 및 시사점



- 영국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명시적으로 대리하는 한, 선량한 계약자의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함.
- 영국 개정(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맺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 중개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해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22)</sup>
  -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모집인 또는 그 소속기관이 계약3권의 존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며, 계약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모집인의 권한별 효력 및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기라 쉽지 않음.
  -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와 중개대리점의 고지수령권이 인정될 경우 고지의무 관련 모집종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동 부정행위에 대해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생기게 됨.
    -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비롯한 보험대리점의 부실고지에 따른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는 있음(「보험업법」제102조).
    - 그러나 보험금 지급책임에 비해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행동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못함.<sup>23)</sup>
  - 지금까지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는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의 공모에 의한 보험료 사기 가능성이었으나, 반대로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암묵적인 기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sup>22)</sup> 양승규(2002)는 「상법」제90조에 명시된 중개대리상의 통지수령권을 보험중개대리점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하여 보험중개 대리점의 통지수령권을 인정함은 물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수령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sup>23)</sup>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유리함. 이를 테면 부실고지 당사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모집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선량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모집인을 상대로 사기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의 부지급에 대해 분쟁 소송하는 것이 유리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이 향후 계약자의 보험구입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Law Com No. 319 and Scot Law Com No. 219, para 8.6).

-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보험모집 시 계약3권 존부에 대한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모집 시 계약3권 존부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kiqi